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42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42683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030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박원환

변론 종결 2024. 10. 31.

판결 선고 2024. 11. 1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03056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9.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1. 9. 9. 접수 제21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윤영

판사오지영

판사양철순